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302 |
|------|-----|

제출년월일 : 2007. 8. 17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07. 8. 17.
- 다. 회부일자 : 2007. 8. 21.
- 라. 상정일자: 제168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7. 9.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도시계획국장 : 이인근)

- 가. 제안이유
  - 우리시가 출자한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서울의료원 부지로 사용중인 체비지 무상대부 사용기간(2002.9.1~2007.8.31)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이전시 까지 무상대부허가 갱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제16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를 무상대부하고자 함.

- ※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1977년 7월 시립동부병원과 남부병원을 통합·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6개 시산하 병원의 허브병원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자치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임.

3. 참고사항

가. 무상 대부허가 재산 현황

- 명 칭 :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 171-1
- 규 모 : 31,656.9㎡(9,576평)
- 토지가액 : 234,261백만원(2007년 공시지가 기준)
- 대부기간 : 2007.9.1~2012.8.31(계약일로부터 5년)
- 재산소관 :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영동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나. 무상대부조건

- 대부계약서에 의거 대부하고자 함

다.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라. 체비지 사용경위

- '77.7 : 시립중부, 남부병원을 시립강남병원으로 통합 신축 개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부지 무상사용
- '91. 4 :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 부과징수조례 제정, 공포
  - 동 조례 제10조(권한위임)에 의거 부과징수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 '91. 8 : 체비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강남구청)

- '97. 4 : 강남병원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항 처리방안(시방침)
  - 변상금 부과 취소(채납액 176억원)
- '02. 10. : 강남병원부지(체비지) 무상대부 시의회 동의안 가결
  - 대부기간 : 2002.9.1~2007.8.31

4.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지방공사 서울의료원 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서울의료원에서 무상 대부로 사용중인 강남구 삼성동 171번지의 1필지의 대부기간이 2007.8.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이전시까지 무상대부 허가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제1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자치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료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으로, 공공진료 기능 수행에 따른 병원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서울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본 체비지의 무상대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 구성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